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26 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김민석·박상혁·윤후덕

이용빈 · 이상헌 · 정청래

이광재 · 최종윤 · 강훈식

강병원 · 장철민 · 강득구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,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,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, 제24조의2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・제2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3호"를 "제1호의2, 제3호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·변경등록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 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·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
 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

제3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

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·변경등록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한 자

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·변경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사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·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·변경등록·신고·변경신고를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24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영업       | 제24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  |
|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영업소 폐쇄(제3조의2제1항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.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명하거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나, 품목의 제조·수입 및 판매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(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하는 알선 • 수여를 포함한다)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할 수 있다. 다만, <u>제3호</u> 또는 | 제1호의2, 제3          |
| 제14호(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         | <u>호</u>           |
|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.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      | 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·변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등록 또는 신고·변경신고     |

2. ~ 14. (생략) ② (생략) <신 설>

제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6조(벌칙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#### 를 한 경우

- 2. ~ 1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2(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 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 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· 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 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 를 제출한 경우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 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• 변 경등록 또는 신고 · 변경신고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를 한 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u>1의2</u> . · <u>1의3</u> . (생 략) | <u>1의3</u> .・ <u>1의4</u> . (현행 제1호의2 및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호의3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| 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</u>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를 제출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2의2</u> . · <u>2의3</u> . (생 략) | <u>2의3</u> . • <u>2의4</u> . (현행 제2호의2 및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호의3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• 4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| 3. •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